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합530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조상준

피고 1. A

2. B

3. C

4. D

피고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권석현

변론 종결 2021. 10. 15.

판결 선고 2021. 11. 26.

주 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E과,

1) 피고 A 사이에 2020.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 피고 D 사이에 2020. 8. 5.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나. E에게,

1) 피고 A은 인천지방법원 2020. 8. 5. 접수 제358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피고 D는 인천지방법원 2020. 8. 6. 접수 제3601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E과,

1) 피고 B 사이에 2020.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 피고 C 사이에 2020.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20. 8. 7.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나. E에게,

1)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2020. 8. 5. 접수 제3581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피고 C는 인천지방법원 2020. 8. 5. 접수 제3581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인천지방법원 2020. 8. 7. 접수 제361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피고 A, B,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에게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 10. 26.	중소기업은행	G	2017. 10. 25.(변경 후 : 2020. 10. 23.)	840,000,000원(1,050,000,000원)
---------------	--------	---	-------------------------------------	------------------------------

나)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등 가)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회사(대표자: E)	2020. 9. 14.	2020. 9. 1.자 원금연체	4,570,765,420원(합계 7건)
-----------------	--------------	-------------------	-----------------------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12. 2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853,136,202원(= 원금 840,000,000원 + 이자 13,136,2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1. 1. 28. 이 사건 회사 및 E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으로 864,627,067원(= 대위변제금 853,136,202원 + 대지급금 8,301,175원 + 위약금 3,18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21차전937호)을 신청하였고, 2021. 2. 1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E과 피고 D의 매매예약 체결 E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5. 피고 D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20. 8.

6. 접수 제36015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등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3.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H)이 있었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의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등 참조), 설령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E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E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자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D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D는, E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3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E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자신은 E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이 약속한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독촉에 대하여 일로부터 5개월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인바, 피고 D로서도 그 무렵 E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E에게 다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채권자들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2020. 3. 17. 피고 D에게 대여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나 사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D는 E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고 보이며, 피고 A 등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다른 자들도 피고 D와 특별한 친분이나 신분관계가 있는 자들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D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E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후

판사심웅비

판사김준영

별지